

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12. 제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9. 6. 12.
다. 상정일자 : 2009. 6. 19.(제160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평희)

가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의운영 조례에 통합방위예규 적용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충청북도와 군부대의 협조요청과
- 지역내 통합 방위 상황 (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, 재해재난등) 발생시 신속한 방위 작전 수행을 지원코자함

나. 주요내용

- 제천시 지역내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, 재해재난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제천시 통합방위예규 적용
(안 제7조 신설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제천시관내에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, 재해재난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제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조례에 포함시켜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도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이 없으며

- 충청북도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자치행정과장 김평희)
“없 음”

5. 소수의견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